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4년 3월호

#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#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

다. 금리·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

라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나. K-OTC시장 운영규정

다. 표준투자권유준칙

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

마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

바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

사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

## 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)

## 1. 법률\*

###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2024/2/13 개정 · 2024/8/14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(제7조 제3항, 제101조 제1항)
  -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
    -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·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, 광고규제,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
    - SNS·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
  -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
    - 단방향 채널은 예를 들어,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, Push 메시지, 알림톡 등
  -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(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)
- 영업규제 정비(제101조의2, 제101조의3)
  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·과장광고를 금지하고,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·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,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-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함

□ 진입 및 퇴출규제 정비(제446조 제17호의3, 제449조 제1항 제34호의3)

-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(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 등)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·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 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
  - 직권말소 사유에 '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'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·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,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  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)

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4/2/1 개정·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의무를 규정화하며, MMF 시가평가 시행 (2023.4.1.)에 따른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도입(제3-24조의3)
  -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준을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함
    - 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
-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의무화(제7-24조 제1항 및 제4항)
  - 증권형 공모펀드의 종류형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,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'온라인 전용 펀드' 설정을 의무화
   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
-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운용구조(직·간접 병행)를 반영한 평가 방식 규정(제7-36조 제1항)
  - 외국환평형기금MMF의 직접 운용분을 별도의 MMF로 간주하여 100%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타 연기금투자 풀MMF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30년국채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 개정)
- 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불공정거래 신고 일반포상금 한도 증액 및 지급대상 확대)
- 다. 금리·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자 의무 미이행시 조치절차 개선)
- 라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(KRX-TR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정보 유형 추가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2/5 개정 · 2024/2/19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정부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초장기국채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효율적인 초장기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고자 30년국채선물시장 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30년국채선물의 기초자산(제20조의6 제1항 제4호 신설)
  - 기초자산은 액면 100원, 만기 30년, 표면금리 연 100분의 5,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표준물로 정함
- 30년국채선물의 호가가격단위(제20조의8)
  - 호가가격단위는 기초자산의 만기가 길어 금리 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큰 점을 감안하여 3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0.02로 설정
    - 3년국채선물거래, 5년국채선물거래 및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0.01
- 30년국채선물의 이론가격(별표 9)
  - 이론가격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평균선도수익률을  $\sum_{i=1}^{60} \frac{5/2}{(1+r/2)^i} + \frac{100}{(1+r/2)^{60}}$ 에 대입하여 계산함
- 30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가격(제20조의9)
  -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에 산출한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을  $\sum_{i=1}^{60} \frac{5/2}{(1+r/2)^i} + \frac{100}{(1+r/2)^{60}}$ 에 대입하여 계산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30년국채선물 및 30년국채선물스프레드의 호가 가격제한비율,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, 협의대량거래 가격제한비율 (별표 14, 별표 24, 별표 26)
  - 호가 가격제한비율은 일간 변동률 관련 통계 및 10년국채선물의 가격제한비율(2.7%)등을 고려하여 3.9%로 설정
  -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및 협의대량거래 가격제한비율은 10년국채선물의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(0.9%) 및 협의대량거래 가격제한비율(0.9%) 등을 고려하여 각각 1.3%로 설정
  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(제46조, 별표 1, 별표 1의2, 별표 6, 별표 6의2, 별표 17의2, 별표 19, 별표 19의2, 별표 26)
  - 선물스프레드거래, 기초자산기준가격, 세부 시장의 구분, 호가내용 입력코드, 일괄호가취소의 신청, 호가수량한도, 계약당선물스프레드증거금액, 계약당최소증거금액,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, 협의대량거래의 가격범위 등

#### 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4/2/16 개정 · 2024/2/19 시행)

##### 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, 일반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 및 장려하기 위함

##### 2) 주요 내용

- 일반포상금 한도 증액(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)
  - 일반포상금 지급 한도를 정부부처 수준이 30억원으로 상향하고 10개 중요도 등급의 각 구간별 기준금액을 조정
  
- 일반포상금 지급대상 확대(제6조의3 제1항 제2호)
  -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어 2024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신고사건이 검찰 고발, 수사기관 통보 이외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도 일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
  
- 고액 포상금 지급 결정시기 조정(제6조의3 제5항)
  -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포상의 경우, 지급결정 시기를 분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신설

다. 금리·통화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4/2/6 개정·2024/2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30년국채선물이 신규상장(2024.2.19) 예정임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시장조성자 의무 미이행시 조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장조성대가 지급시기 관련 단서조항 신설(제12조)
  - 시장조성대가는 통상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나, 해당 지급시기를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
- '시장조성 의무이행 실적 평가 기준'에 30년국채선물 관련 내용 추가 및 의무미이행시 조치절차 개선(별표 4)
  - 30년국채선물의 기간의무이행률 등을 기존 금리상품(5년국채선물 등)과 유사하게 정함

30년 국채선물 의무평가 관련 지표 3등

30년 국채선물 의무평가 관련지표	
기간의무이행률	70%
일중의무이행률	70%
연계상품	3년·10년 국채선물

- 시장조성 최종 의무 미이행시 상품별로 기간의무이행률에 따른 벌점을 산출한 후 합산 벌점에 따라 경고 및 계약 해지하는 방식에서, 벌점산출 단계를 삭제하고 기간의무이행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 경고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
  -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품 중 기간의무이행률이 50%미만인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, 기간의무이행률이 25% 미만인 상품이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음
  - 다만, 거래소가 시장 유동성 부족으로 의무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
- 시장조성 표준계약서 기재 필요사항 관련 조항 신설(별지 제2호 서식 제5조)
  - 시장조성대가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및 지침의 대가산출 예외조항 적용시 계약서상 기재 필요사항 관련 조항 신설

**라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2/28 개정 · 2024/3/4 시행)****1) 개정 이유**

-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TR사업부 간 CFD 관련 데이터 송수신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TR사업부의 내부 보안절차를 강화하기 위함
  - 금융위의 '거래정보저장소(TR)의 정보제공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요청 승인안'(2023.11.)에 근거

**2) 주요 내용**

- TR구성원 내부 보안 강화조치로 KRX-TR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정보 유형 추가(별지 제6호 서식)
  - 시장감시위원회의 CFD 관련 데이터 요청으로 TR구성원이 직·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시장감시(심리)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
  - 수집 정보(불공정거래 대상 종목에 관한 정보 등) 추가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요구항목 추가(비밀유지서약서 서식 정비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ESG펀드 공시 사항 자산운용보고서에 반영)
- 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(시장경보제도 도입 및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)
- 다. 표준투자권유준칙 (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)
- 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주문착오방지를 위한 상품별 경고·보류기준 개정)
- 마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 반영)
- 바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에 30년국채선물 관련 필요사항 정비)
- 사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설명서 내 위험등급의 의미 부분 개정 등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4/2/20 개정 · 2024/2/29 시행)<sup>1)</sup>

1) 개정 이유

- 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개정(2023.10.20.)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,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중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ESG펀드 공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’ 개정(별지 제 9호)
  - (투자전략) ESG펀드 관련 투자목적,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등 의사 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(제1장 제4절 제7호 신설)
    - ESG집합투자기구(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‘ESG(환경, 사회적 책임, 지배구조)’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 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“ESG”가 포함되어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에 ‘ESG’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)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ESG와 관련된 투자목적, ESG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, 관련 투자대상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및 방법 등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
  - (운용경과) ESG펀드의 운용실적과 ESG의 연관성, 투자목적 등의 이행현황, 주주활동 실시내역 등 기재(제2장 제1절 제3호 신설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
 1) <별지 제9호> 「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보고서」는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2024년 3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 부터 적용

-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경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이행현황,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활동을 실시한 경우 그 내역 등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기재하며, 비교 또는 참고지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수와의 운용성과 비교 내역을 기재
- (투자운용인력) ESG펀드 운용인력은 과거 ESG 펀드의 운용이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(제4장 제1절 제6호 신설)
  - ESG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의 과거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력을 구분 기재
- (펀드 비용) ESG펀드가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펀드재산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기재(제5장 제2절 제6호 신설)
  -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평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(계약기간, 평가비용, 비용지급주기) 및 실제 지급한 평가비용 등을 기재. 다만,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
- ESG펀드 관련 집합투자기구 분류(별지 제15호)개정 반영
  - ESG펀드의 공시 및 통계 집계 등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 분류에 ESG펀드 분류 반영
    - 분류코드 9차 61번(종전 SRI펀드)을 ESG펀드로 변경

## 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(2024/2/20 개정 · 2024/7/1 시행)<sup>2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K-OTC 기업의 주가 급변 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,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관계 법규 개정 사항 및 규정 명확화 등 제도 정비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시장경보제도(제37조 제1항 제10호, 제55조의2 신설)
  - K-OTC 기업의 주가 급변시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촉구할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도입
    - 투자주의종목·투자경고종목·투자위험종목 지정, 공표 및 해제등에 관한 근거 신설
    - 투자경고·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한 매매거래정지 근거(투자위험종목 지정일 당일 매매거래정지 포함) 신설

2) 시장경보제도 관련 전산개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제37조 제1항 제10호 및 제55조의2는 개정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-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(제21조 제2항 제1호, 제21조 제2항 제5호, 제30조 제2항 제12호)
  -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를 호가 시에 구분 입력하도록 함
-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근거 명확화(제2조 제1항 제17호, 제2조 제1항 제18호, 제46조)
  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등록법인이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공시서류를 사업보고서로 같음할 수 있도록 허용
  -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적용되도록 규정 명확화
- 조회공시 미답변시 매매거래 정지기간 정비(제37조 제1항 제1호, 제37조 제1항 제4호)
  - 등록법인이 조회공시 요구에 기한 내 미답변하는 경우 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1영업일에서 조회공시 답변시까지로 변경
    - 등록해제사유에 대한 조회공시인 경우에 한해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거래정지
- 등록·지정해제에 따른 정리매매시 매매거래 정지 규정 배제(제37조 제4항 신설)
  - 등록·지정해제 되는 주권의 정리매매 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배제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
- 정기공시서류 제출 관련 투자유의 해제근거 마련(제53조 제2항 제5호 가목)
  -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로 인해 투자유의지정된 경우, 유예기간(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0일) 내 제출 시 투자유의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

## 다. 표준투자권유준칙 (2024/2/15 개정 · 2024/3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 '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' 중 공모집합투자증권의 시장위험 등급 기준 구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(참고 3)
  - (상품별 위험등급)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의 등급 기준 구간을 5단계 이상에서 6단계 이상으로 변경

[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]

	1등급 (고위험)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 (저위험)
97.5% Var	50% 초과	50% 이하	30% 이하	20% 이하	10% 이하	1% 이하

\*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 $\sqrt{250}$ )를 곱해서 산출

- (위험등급 산정기준)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금융투자상품 및 특정금전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한 별도의 산정 기준 신설
  - 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, 헤지 목적 파생상품 편입 시 특례 있음

라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4/2/7 개정 · 2024/2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30년국채선물 신규상장(한국거래소 2024.2.19.) 신상품에 대한 주문착오방지를 위한 경고 · 보류기준을 제시하기 위함
  -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i) 금액, ii) 수량, iii)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 (경고기준) 또는 책임자 승인(보류기준)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

2) 주요 내용

- 상품별 경고 · 보류기준 개정(별표 1)
  - 신규 상장되는 30년국채선물의 주문가격에 대한 경고(50틱 초과~100틱 이하) · 보류기준(100틱 초과)을 기존 금리선물(3 · 5 · 10년 국채선물)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
  - 기존 금리선물과 대부분 동일한 30년국채선물의 상품 특성(기초자산, 거래단위 등) 반영
    - 다만, 금리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감안하여 30년국채선물 호가가격단위(틱)은 10년국채선물(0.01)보다 큰 0.02로 설정

마.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4/2/29 개정 · 2024/3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투자성 상품의 실질위험도를 반영한 위험도 산정기준인 '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'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정비하기 위함
  - 「표준투자권유준칙」(2024.3.1. 시행)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

2) 주요 내용

- '투자자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(예시)'을 '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'으로 대체(별첨 3)
  - 다만, '위탁자 안내사항' 부분은 모범규준 본문으로 이동
  - (대체 이유)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은 각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재 방식의 세부자산배분 예시는 불필요
    - 신탁은 개별 맞춤형 계약으로 계약내용 및 운영전략에 따라 위험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바, 협회가 현재 방식의 단일 참고안을 제시할 경우 상품 운영의 유연성 저해

〈별첨3 투자자유형별 세부자산배분유형(예시)〉 주요 내용

다음의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제시

- (위탁자 안내사항) 표준투자권유준칙의 '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' 내용 중 투자자에 대한 설명 사항을 기술
- (투자자유형별 세부자산배분) 1~5단계의 각 투자자 유형별로 편입가능한 세부자산의 종류를 제시(의무사항이 아닌 참고사항)

예시)

상장주식	투자자유형
관리종목, 위험종목, 투자경고종목 등	투자자 유형 1등급
일반종목	투자자 유형 2등급

-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중 신탁계약 체결 절차,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내용 정비(본문 Ⅲ)
  - 참조 문구 정비(별첨3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참조)
  - 기존 별첨 3에 있는 '위탁자 안내 사항'을 본문으로 이동

### 3) 관련 실무지침 개정

- 신탁·일임·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(2024/2/29 개정·2024/3/1 시행)
  - 금융위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'금융상품 위험도 등급기준(예시)'를 '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'으로 개정
    - (등급체계) 모든 금융상품에 1~6등급 체계로 변경(가장 고위험 등급 : 1등급)

### 바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2024/2/15 개정·2024/2/19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30년국채선물을 신규상장(한국거래소 2024.2.19.)에 따라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개정(2024.2.5.)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한국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에 30년국채선물 추가
  - <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> 중 30년국채선물 관련 반영필요사항 정비

구분	기존	개정
		국채선물
최소호가단위	0.01포인트	<u>0.01포인트(3년물·5년물·10년물)</u> 0.02포인트(30년물)
최소가격변동금액	10,000원 (0.01x0.01x1억원)	<u>10,000원</u> (3년물·5년물·10년물, 0.01x0.01x1억원) 20,000원 (30년물, 0.02x0.01x1억원)
일일가격제한폭 (기준가격 대비 상하)	±1.5%(3년물) ±1.8%(5년물) ±2.7%(10년물)	±1.5%(3년물) ±1.8%(5년물) ±2.7%(10년물) ±3.9%(30년물)
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	±0.5%(3년물) ±0.9%(10년물) *5년물은 미적용	±0.5%(3년물) ±0.9%(10년물) *5년물, 30년물은 미적용

## 사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2024/2/27 개정 · 2024/3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투자성 상품의 실질위험도를 반영한 위험도 산정기준인 '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'을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기 위함
  - 「표준투자증권유준칙」(2024.3.1. 시행)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

### 2) 주요 내용

- 설명서 내 '위험등급의 의미' 부분 개정 및 파생결합증권 유동성 위험 설명 내용 추가 반영
-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설명서 개정 내용
  -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(수익률) 변동성에서 'VaR(Value at Risk)' 방식으로 변경하여 산정
-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설명서 개정 내용
  - 시장위험 및 발행사 신용위험을 결합한 종합등급으로 최종 위험등급을 산정함
  - 유동성 위험에 대해 '중도환매 불가', '중도환매시 비용발생', '중도환매 허용' 중 해당 상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표시하고, 그 세부 사항을 추가로 설명

### 3) 관련 상품설명서 개정

-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(2024/2/27 개정 · 2024/3/1 시행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